

2002. 4. 23(火)

제79회임사회제2차분회의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總 務 社 會 委 員 會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 16 제 천 시 장
- 나. 회 부 일 자 : 2002. 1. 16
- 다. 상 정 일 자 : 2002. 1. 21 (제77회임시회총무사회위제1차회의)
- 라. 재 상 정 일 자 : 2002. 4. 17 (제79회임시회총무사회위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가. 제안이유

- 읍·면·동 기능전환 및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전담할 한시 기구를 설치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5조(총무사회국에 두는 과) 제1항에서 자치행정과 다음에 “주민지원과” 를 삽입.
 - ※ 총무사회국에 5급과장 보직의 1개과를 2002.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설하는 내용임.
- 동조 제1항 제22호, 제23호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및 읍면동 기능전환 준치, 이관사무 및 주민자치위 구성·운영 및 주민불편사항 처리 등 담당 업무를 신설.
- 부칙 제2조에서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을 0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태훈)

○법규적검토

- 대통령령 제16,713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 이를 근거로한 행정자치부 자제 13101-486(01. 7. 3)호에 의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승인 사항과 충북도 행정 13101-1671(01. 7. 5)호의 동 건 승인내용은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담당할 업무의 범위를 추가한 것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개정조례는 행정 내부적 사항임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한 채 02. 1. 15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행정적 검토

-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함께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동 개정조례의 내용인 바,
- 지난 01. 9. 17일 제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시기상조” 또는 “구체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 됨으로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중론에 따라 “유보” 결정을 한 바 있음.

- 이후, 도내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기능전환과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들어 중앙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문제점을 제시하는 가운데 각 의회마다 속속 “보류”의 의결을 내어 놓거나 의결된다 하여도 시행방법의 수정이나 그 시기를 늦추는 등의 행보를 보임으로써 종전보다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할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 또한 2002년도 당초예산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도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일련의 결정들은 기능전환과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더 두고 보아야할 과제”로 미루고 있는 추세에서
- 그 업무를 전담할 한시기구 설치관련 조례안이 제출됨은 사뭇 쾌를 달리한다 할 것임으로 이론의 소지가 있는 가운데
- 금번의 개정조례안은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 예산이 맞물려 돌아가야할 선·후의 문제가 아닌 “동반”의 관계에서 검토될 사항이라 하겠음.
- 따라서 금번 의결은 위의 모든 흐름을 수용하는 한편 도내에서는 11개 시·군중 5개 시·군은 한시기구를 가결하였고, 6개 시·군은 미상정 되거나 부결 또는 보류되었으며, 자치센터 설치조례는 5개 시·군이 가결, 6개 시·군이 부결 또는 보류된 상태임을 고려함과 동시에
- 향시 인사적체에 시달리는 공직내부에 일부 숨통이 트이는 사무관급의 승진문제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심사보고 붙임서류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